

구미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3. . .
발 의 자	김민성 의원 외 20명

구미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민성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3. . .

발 의 자 : 김민성 · 강승수 · 김근한 · 김낙관
김영길 · 김영태 · 김원섭 · 김재우
김정도 · 김춘남 · 박교상 · 박세채
신용하 · 양진오 ·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 장미경 ·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의원(21명)

1. 제안이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활
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나.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자율상권조합 설립 구비서류(안 제4조~제5조)
- 다. 상권 전문관리자 업무범위, 조합 사업 지원, 지원 절차(안 제6조~제8조)
- 라. 조합 사업결과 보고, 자율상권구역 재산 관리(안 제9조~제10조)
- 마. 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안 제11조)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나. 부서검토: 일자리경제과 의견제출(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붙임)

구미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미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해당 구역이 포함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제4조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

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영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제7조(자율상권구역 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기타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8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단,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100분 10 미만일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자율상권조합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재산 관리)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으로서 민간의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

제11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지역상생구역의 건전한 영업과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및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구미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권”이란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자·임대인·임차인, 토지소유자, 주민 등이 어우러져 지역에 특화된 생활·문화·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상가건물 밀집지역을 말한다.
2. “지역상생구역”이란 지역상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 나.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 다. 제12조에 따른 구역의 지정 신청 당시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한 곳이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생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구역”이란 지역상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나.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다. 제15조에 따른 구역의 지정 신청 당시 사업체수, 매출액 또는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곳

5.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의 시행) ① 자율상권조합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변경 신청
2.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약 체결 지원
3. 교육·경영지원 사업
4. 환경·영업시설의 정비 사업
5. 자율상권구역의 특성화 사업
6.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발전과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상권조합이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①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관리·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그 밖에 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성화구역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조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2. 상가건물 소유자에 대한 건물 개축, 대수선비 등의 용자
3. 상인 및 제2항에 따라 활성화구역에 입주한 자에 대한 시설비, 운영비 등

의 용자

4.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비 등의 보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활성화 구역 내의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범위, 지원신청의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업종 제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상생구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맹사업 중 연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점포의 경우 연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체인본부가 직영하는 점포에 한한다)
5. 그 밖에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금지·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상생협의체의 협의 및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③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지·제한하는 것으로 공고된营业을 하려는 자는 营业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상생협의체와 사전사업조정에 대한 협의 및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사전사업조정에 대한 협의 결과를 등록한 것으로 간주한다.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등) 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100개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을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한 것을 말한다.

제19조(자율상권조합의 지원 사업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율상권 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권정보 데이터화,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기술 도입 등 상권의 디지털화 지원
2. 지역특화상품의 개발·판로지원·홍보 등 지원
3. 축제·행사 개최 등을 통한 판로촉진 및 상권홍보 등의 지원
4. 상인 등에 대한 교육·경영 지원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자율상권조합이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 추진 목적 및 방안
2.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재원조달 방안
3. 사업 완료 후 효과
4.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상인 등과의 협의 방안
5.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 지원 사업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23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① 법 제30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서 “상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상시영업상인

2. 자율상권조합

3. 그 밖에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자

검 토 의 견 서

부서명 : 일자리경제과

조 례 명	구미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검토 사항 ○ 근거 법령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 제23조, 제30조, 제31조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3조 □ 주요 사항 ○ 조례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자율상권조합 설립 구비서류(안 제4조~제5조) ○ 상권 전문관리자 업무범위, 조합 사업 지원, 지원 절차(안 제6조~제8조) ○ 조합 사업결과 보고, 자율상권구역 재산 관리(안 제9조~제10조) ○ 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안 제11조) □ 검토 결과 ○ 해당 조례는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례안에 대해서 부서 검토 결과 이견 없음 ○ 쇠퇴해가는 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에 특화된 문화의 지속적인 발전 및 지역 서민경제 부흥을 위해 해당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 ○ 기대효과 : 상권 부활을 위한 지원사업 실시 가능 ○ 소요예산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문 제 점 : 없음	

구미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구미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조례 제7조(자율상권구역 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 사업 지원시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대상지가 불분명하고 선언적으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어떠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할지 정확하게 어떤 대상지에 할지에 대해 특정 지어지지 않아 추계 곤란

4.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시장활성화팀 김보우(☎054-480-2633)